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402 발의연월일: 2025. 1. 9.

발 의 자: 박정현·이해식·김남근

진선미 • 김한규 • 고민정

염태영 · 채현일 · 박지원

이연희 • 박민규 • 박해철

서미화 • 이재관 • 허성무

김 윤·문진석·김동아

김문수 • 이기헌 • 이용선

정일영 · 이수진 · 강준혁

최민희 · 김영환 · 이광희

양부남 · 이학영 · 박희승

의원(30인)

제안이유

최근 교제를 하고 있거나 교제를 종료한 사람에 대한 폭력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교제폭력 관련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, 교제폭력 관련 사건이 살인, 강도, 강간 등 강력범죄로 다수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제폭력 관련 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이부재한 상황임.

이로 인해 가해자 대부분이 「형법」과 그 밖의 법률로 처벌받고 있으나, 신고 시 현장에서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취할 수 있는 제재수 단이 제한되어 현장조치에 한계가 있고,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 단이 부재해 보복범죄나 재발범죄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 황임.

이에 교제폭력범죄 행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 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전자장치 부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, 교제폭력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용어의 정의에 교제폭력범죄를 추가(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5).
- 나. 검사는 교제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하였거나, 부착하지 않았으나 형 집행 종료 이후 10년 이내 재범을 한 경우 또는 습벽이 인정될 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제6항 신설).
- 다. 검사가 교제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가 판단되는 경우 보호 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1조의2제6호).
- 라. 전자장치 부착 집행과 부착 집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처분을 규정함(안 제31조의6).
- 마.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 자료의 보존·사용·폐기 등의 절차를 규정함(안 제31조의8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」(의안번호 제740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 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호 중 "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"을 "강도범죄,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를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5. "교제폭력범죄"란 「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3호의 죄를 말한다.

제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"제5항까지의 규정에"를 "제6항까지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9항(종전의 제8항) 중 "제5항까지의 규정에"를 "제6항까지에"로 한다.

- ⑥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교제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.
- 1. 교제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때
- 2. 교제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

는 사람이 다시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때

- 3. 교제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(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) 그 습벽이 인정된 때
- 제21조의2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6.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교제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
제31조의6제1항 중 "제9조제1항제3호의2에"를 "제9조제1항제3호의2 또 는 「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1조제1항제5호에"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 호의2에"를 "제9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2 또는 「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제2호 · 제3호 및 제5호에"로. "스토킹 행위자의"를 "스토킹행위자 또는 교제폭력행위자의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"제9조제1항제2호를"을 "제9조제1항제2호 또는 「교제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" 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제9조제4항을"을 "제9조제4항 또는 「교 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1조제4항을"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스토킹행위자가"를 "스토킹행위자 또는 교제폭력행위자 가"로. "제9조제1항제4호에"를 "제9조제1항제4호 또는 「교제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1조제1항제6호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 6항 중 "제11조제5항에"를 "제11조제5항 또는 「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3조제5항에"로 한다.

제31조의8의 제목 중 "수신자료의"를 "등의 수신자료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스토킹행위자의"를 "스토킹행위자 또는 교제폭력행위자의"로, "수신자료"를 "등의 수신자료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수신자료는"을 "등의 수신자료는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혐의에"를 "혐의 또는 「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제폭력범죄 혐의에"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중 "이행"을 "또는 「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1조제1항제2호·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이행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중 "제11조에"를 "제11조 또는 「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항 또는 「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항 또는 「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5조제1항제2호에"로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수신자료를"을 각 "등의 수신자료를"로 한다.

제36조제3항 중 "수신자료를"을 "등의 수신자료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
1. "특정범죄"란 성폭력범죄,	1
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, 살	
인범죄, <u>강도범죄 및 스토킹</u>	<u>강도범죄, 스토킹</u>
범죄를 말한다.	범죄 및 교제폭력범죄를
2. ~ 3의4. (생 략)	2. ~ 3의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의5. "교제폭력범죄"란 「교제
	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
	특례법」 제2조제3호의 죄를
	<u>말한다.</u>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)	제5조(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)
① ~ ⑤ (생 략)	① ~ ⑤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⑥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
	하나에 해당하고 교제폭력범죄
	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
	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
	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.
	1. 교제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
	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
	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
	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

<u>⑥</u> 제1항부터	제5항까지의 구	7
<u>정에</u> 따른 부	착명령의 청구는	=
공소가 제기된	특정범죄사건의	긔
항소심 변론종	결 시까지 하여	뉙
야 한다.		

<u>⑦</u> (생 략)

- ⑧ 제1항부터 <u>제5항까지의 규정에</u> 따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할수 없다.
- 제21조의2(보호관찰명령의 청구) 지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

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
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교제
폭력범죄를 저지른 때
3. 교제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
하여(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
경우를 포함한다) 그 습벽이
인정된 때
<u>⑦</u> <u>제6항까지에</u>
<u>.</u>
<u>⑧</u> (현행 제7항과 같음)
<u> ⑨제6항까지에</u>
 제21조의2(보호관찰명령의 청구)
 제21조의2(보호관찰명령의 청구)
 제21조의2(보호관찰명령의 청구)
 제21조의2(보호관찰명령의 청구)

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때

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(이하 "보호관찰명령"이라 한다)을 법원에 청구할 수있다.

1. ~ 5. (생 략) <신 설>

제31조의6(전자장치 부착의 집행) 지 ① 법원은 「스토킹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 항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 (이하 이 장에서 "잠정조치"라 한다)로 전자장치의 부착을 결 정한 경우 그 결정문의 등본을 스토킹행위자의 사건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(이하 이 장 에서 "관할경찰관서"라 한다)의 장과 스토킹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(이하 이 장에서 "보호관찰소"라 한다)의 장에서 "보호관찰소"라 한다)의 장에서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.

- ② (생략)
-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토킹

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
으로서 교제폭력범죄를 다시
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
는 사람
제31조의6(전자장치 부착의 집행)
①
제9조제1
항제3호의2 또는 「교제폭력범
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
제11조제1항제5호에
· ② (현행과 같음)
3

행위자가 제2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면 관할경찰관서의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하고, 관할경찰관서의 장은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스토킹행위자의 잠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.

- 1. ~ 6. (생략)
-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토킹 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 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즉 시 통지하여야 한다.
- 1. (생략)
- 2. 잠정조치 기간 중 「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률」 제9조제1항제2호를 위반 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3. 잠정조치 기간 중 「스토킹

<u>제9조제1항제2호·제3호</u>
의2 또는 「교제폭력범죄의 처
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1조
제1항제2호·제3호 및 제5호에
<u>스토킹행위자</u>
또는 교제폭력행위자의
1. ~ 6. (현행과 같음)
4
1. (현행과 같음)
2
-10-7-11-1-10-5 rr 1.
<u>제9조제1항제2호 또는</u>
「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
관한 특례법」 제11조제1항제
<u>2호 및 제3호를</u>
3

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4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
4. (생략)

- ⑤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스토킹행위자가 소재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,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치신청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⑥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「스 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률」 <u>제11조제5항에</u> 따라 잠정 조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 다.

⑦ · ⑧ (생 략)

제31조의8(스토킹행위자 <u>수신자</u> 저 <u>료의</u> 보존·사용·폐기 등)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1조의6 제2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

제9조제4항 또는 「교제
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
트례법」 제11조제4항을
4. (현행과 같음)
⑤
스토킹행위자 또는 교제폭력
<u>행위자가</u>
제9조제1항제4호 또는 「교제
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
례법」 제11조제1항제6호에
6
제11조제5항 또는 「교제
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
례법」 제13조제5항에
⑦ · ⑧ (현행과 같음)
세31조의8(스토킹행위자 <u>등의 수</u>
<u>신자료의</u> 보존·사용·폐기
등) ①

한 <u>스토킹행위자의</u> 전자장치로 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 하여 그 자료(이하 "스토킹행 위자 <u>수신자료</u>"라 한다)를 보 존하여야 한다.

- ② 스토킹행위자 <u>수신자료는</u>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 람·조회·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.
- 1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<u>혐의에</u>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
- 2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
- 3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<u>제11조에</u> 따른 잠정조치의 연장·변경·취소 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위하

	-스토킹행위자 또는 교제폭력
ਠ੍ਹੋ	<u> 병위자의</u>
_	
_	<u>등의 수신자료</u>
_	
2	》 <u>등의 수신자료는</u>
_	
_	
_	,
1.	
	「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
	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3호에
	따른 교제폭력범죄 혐의에
2.	
	 또는 「교제폭력범죄의 처벌
	또는 「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1조제
3.	또는 「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1조제 1항제2호·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이행
3.	또는 「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1조제 1항제2호·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이행
3.	또는 「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1조제 1항제2호·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이행

여 사용하는 경우

- 4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제1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 하는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
-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 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스토킹행위자 <u>수신자료를</u> 열람 또는 조회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 및 제5 항을 준용한다.
-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토킹행위자 <u>수신자료를</u> 폐기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 략) 제36조(벌칙) ① · ② (생 략)

③ 수신자료(스토킹행위자 수 신자료를 포함한다)를 관리하 는 자가 제16조제2항 또는 제3 1조의8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
4
<u>제2항 또는</u>
「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
관한 특례법」 제25조제1항제
<u> 2호에</u>
③
<u>등의 수신자료를</u>
4
등의 수신자료를
· 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36조(벌칙) ① • ② (현행과
같음)
③ 5
의 수신자료를